| | 감 사 규 정 | 규정번호 | 3-1-15 |
|---|---|---|---|
| | | 제정일자 | 2013. 7. 1. |
| | | 개정일자 | 2023. 9.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의 기준과 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감사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관계 서류를 검토.확인하는 약식감사를 말한다.
4. 현장감사는 서류 검토 외 직접 감사대상 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11.01.>

제4조(감사부서) 내부감사의 주관부서는 산학기획처로 하며, 외부회계감사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은 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의 직무를 따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2021.11.01., 2023.09.01)

제5조(감사범위) 감사의 범위는 본 대학 각 부서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각 부서 기관의 중요사업 및 행정업무 전반
3. 기타 총장 또는 산학기획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01., 2023.09.01.)

제6조(감사시행) 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회계감사로 구분한다.

1. 내부감사는 총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구, 외부 기관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할 수 있다.
2. 외부회계감사는 회계부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회계사가 주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11.01.]

제7조(감사계획서 제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기간 및 실시방법
4. 감사내용
5. 감사단의 편성 내용
6. 기타사항

제8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감사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대상부서의 의무)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보고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 및 건의사항

제11조 삭제 <2014.10.6.>

제12조(시정요청) 감사부서의 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시정사항을 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결과보고) 시정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감사단은 감사 중 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2014.10.6.>

제17조(공익신고자 보호) ① 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든지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03.01.)

② 신고자에게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③ 감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④ 그 밖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3.01.)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